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이병도 의원 외 26명
- 나. 의안번호: 제2310호
- 다. 발의일자: 2021. 4. 2.
- 라. 회부일자: 2021. 4. 6.

2. 제 안 사 유

-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원순환을 통해서 서울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,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교육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자원순환을 생활화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분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제3호 신설).
- 나. 전문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 신설).
- 다.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교육을 규정함(안 제16조 신설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순환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분 사항을 명시하고 전문적인 자원순환을 위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3조는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과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자원순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순환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바, 안 제3조제3호와 같이 ‘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적정 처분’을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13조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안 제8조와 같이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·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임.

「자원순환기본법」

제13조(자원순환 통계조사) ①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·집행계획의 수립과 제14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·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- 안 제16조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